

공고 제2024-067호

##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

「도로법」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일

구 리 시 장



도로의 종류	일반도로	노선명	-
점용의 목적	급수배관 매설	점용기간	허가일로부터~2032.12.31.
점용의 장소	수택동 408 일원	점용면적	9.6m <sup>2</sup>
점용물의 종류	급수배관	공사기간	2024.5.1.~ 2024.6.12.
공사 방법	노면굴착	굴착 시 교통대책	신호원 배치후 통행유도
도로의 복구방법	원인자 원상복구	도로굴착	-
점용자의 주소·성명	수도과	그 밖의 사항	-